110. 토지(임야) 등록사항 정정

□ 민원개요

○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등록하는 업무.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민원지적과	처리기간	3일	수수료
근거법령	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시행령 제82조 시행규칙 제93조			없음

□ 대상 토지

○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토지

□ 신청 방법

○ 토지 소유자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사항의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

□ 등록사항 정정 신청 구비서류

○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(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)

○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

○ 등기필증, 등기부등본·초본(정정 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)

○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(미등기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)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민원지적과 지적담당	930-3211~3214	